CREDO



CONTENTS

1	Credo Update 국내외 뉴스	5
2	Credo Signature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책 신영철(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 주디스 버틀러의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지지를 비판한다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11 15
3	Credo North Korea 대북지원에 있어 인권에 대한 고찰 : UN의 인권기반 접근법 Amanda Morwedt Oh 북한민권위원회 국제변호 및개발이사	21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토론 보고서 한예정 변호사 탈북민 수기 : 보릿고개 6월에 사과 한 알과 개구리 김보빈 작가	27 30
4	Credo Interview 페미니즘의 흐름을 바꿀 진짜 '센(Saint) 언니들' 최가슬 센(Saint)언니 대표	38
5	Credo Culture 생명에 대한 논쟁: 다윈주의의 거대한 역설, 돌연변이 김학성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설영 작가의 [The Space - Photo Drawing] 최지인 Choi Contemporary Art 관장	43 46









발행일	2021.09.30
발행처	사단법인크레도
문의	02.2055.3306
사이트	www.credoway.org
으트비	∃MFTV

얇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월간 *Credo Magazine의* 발간에 즈음하여…

사단법인 크레도가 자유와 생명을 수 호하는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변신 을 시도합니다.

앞으로 크레도에서는 매주 온라인 뉴스레터 'Credo Update (크레도 업데이트)'를 발간하는 한편, 분기별로 발간되던 Credo Magazine은 새로운 포맷의 월간 잡지로 변경하여 발행합니다. Credo Magazine은 온라인상으로 전달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글로 풀어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보다 깊이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1년 9월 Credo Magazine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립학교법 개정 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❷ EBS에서 방영한 '위대한 수업-그레이트 마인즈' 시리즈의 주디스 버틀러 편에 대한 비판을 싣습니다. 북한이슈와 관련해서는 대북지원에 있어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을 고찰한 아만다 오 변호사의 글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OHCHR)가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토론에서 발표 한 보고자료의 내용을 소개하고 전문 을 찾아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합니 다. 또한 2012년 탈북한 김보빈님의 수기도 담아내었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외 뉴스 중 국민의 헌법적 기본 권과 생명윤리 문제와 관계되는 내용 들을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아무쪼록 얇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새로운 Credo Magazine이 독자 여 러분의 큰 사랑을 받고 기대에 부응 하게 되길 바랍니다.

> 말행인 성소령 크레도 사무총장



사단법인 크레도에서는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과 생명윤리에 관한 이슈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위클리 뉴스레터 Credo Update를 발간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SNS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해체법?

PRO FAMILY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1일과 11일에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각각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두 의원 모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 '건강가 정'에만 지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킬 수 있어 가족형태간의 차별을 야기하는바, 법률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함으로써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가족 구성원간의 평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제안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 "가족" 개념 삭제(제3조 제1호 삭제)
- ▶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 지원", "가족정책" 등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
- ▶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해

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8조와 제9조 삭제

▶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민주적 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는 제2조의 신 설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의 정의를 삭제하고 '가족'으로 대체하면서, 정작 '가족'의 정의(Definition)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위원회와 법무부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의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가정'의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으로 대체하면서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해 버림으로써 넓은 의미로 동성커플, 동성결혼자 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위 '평등법(차별금지법) 조항과 결합하면 결국 동성결혼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성문화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 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 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한 헌법 제 36 조 1항을 위반한 위헌적인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낙태방지를 위한 '심장박동법'통과

PRO-LIFE



2021년 9월부터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초음 것으로써 가장 빠르게는 임신 6주 이후부터 낙 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가 금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 서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1973년 낙태를 합 술 기관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Planned 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의 특징은 일반 시민 누구나가 낙태시술기관이나 낙태시술을 돕는 텍사스 트리뷴 (http://www.texastribune.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 org/2021/05/18/texas-heartbeat-bill-로 낙태시술기관 등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abortions-law/)

제기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텍 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박동소리를 들을 수 있 시스 주정부에서는 이 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 게 되는 때 이후로는 모든 낙태가 금지됩니다. 기 위해서는 낙태시술기관에서 웹사이트나 건 이는 지난 5월, 텍사스 상원이 발의한 SB8 법 물 앞에 '6주 이후의 낙태는 시술하지 않거나 안(소위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에 따른 그에 관해 상담하지 않는다'는 표지를 붙이기

이에 대해 낙태찬성론자들은 텍사스 주의 심 장박동법은 여성이 자신의 임신사실을 알아 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 챌 수 있는 기간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낙태 한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전면 연방대법원에는 15주 이상의 태아에 대한 낙 적인 낙태금지효과를 가진다며 법률지원단체 태를 금지한 미시시피 주의 법이 위헌이라며 인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따라 미국시민자유연맹)와 미국 최대의 낙태시 법화 했던 Roe v. Wade 판결이 번복될 수 있 Parenthood)등 낙태찬성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반드시 법적으로 저항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빅테크 컴퍼니들의 '디플렛포밍(Deplatforming)' 사례와 저항의 물결

LIBERTY

미국에서 'Cancel Culture 캔슬 컬처'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 구글 등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회사들이 사용자들의 콘텐츠를 검열하여 내용을 삭제하거나 특정 사용자의 계정을 중지 또는 취소시키는 관행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캔슬 컬처란 온라인 상의 '왕따'를 뜻하며 한 사람의존재 자체를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삭제함으로써 마치 이 세상에 없는 사람마냥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은 Communication Decency Act (Section 230)에 따라 제 3자가 올린 음란하거나 공격적인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헌법상 보호되는 발언조차도 '혐오발언'이라고 규정하여 마음대로 삭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글과계정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삭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들에서도 몇몇 고객들의 계좌를 동결시키면서 그 이 유로 고객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취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체이스 은행(Chase Bank), 웰스 파고 은행(Wells Fargo Bank), 그리고 대표적인 온라인 지불사이트인 페이팔(PayPal)과 스트라이프(Stripe) 등이 정치적 보수로 알려진 고객들의 은행 계좌를 취소시켜 (Canceled) 문제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의 모든거래를 중지함으로써 어떤 한 사람을 온라인

의 세계에서 퇴출시켜버리는 것을 '디플렛포 밍(Deplatforming)'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런 경향이 심해지자 이에 대항하는 새로운 대 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수논객으로 유명한 Dan Bongino의 얼라인 페이(AlignPay)는 페이팔과 스트라이프의 대 항마로 새롭게 시작하는 온라인 지불사이트이 며, David Rubin의 로컬즈 (Locals)의 경우, 창작자들이 검열당할 위험없이 자신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한 플렛폼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웹호스팅과 애플리케이션 개발플랫폼인 라이트포지(RightForge)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캠페인을 도왔던 Jason Miller의 게터(Gettr)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주도로 가짜 뉴스를 막겠다 며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역시 가짜 뉴스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검열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쪽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검열을 막고자 하는 쪽 사이의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ept. 2, 2021 Daily Signal from Heritage Foundation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언론 길들이는 언론중재법

LIBERTY



2021년 6월 23일, 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 주요내용으로는 은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허위 · 조작정보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가짜뉴 스, 왜곡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 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 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 허위 · 조작보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제17호의2).
- ▶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 업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 음을 기사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쉽게 열람하 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 리 · 감독하기 위해 중재위원회 산하에 정정보 도청구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함(안 제17조의 3).
- ▶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 위 · 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인정되는 손해 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

운 경우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함. 다만, 정무직공무원과 대기업 주요주주,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害)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한하여 위 배상방법을 적용함(안 제30조의2).

- ▶ 언론 등의 기사제목이 허위·조작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독립적인 손해배상 사유 로 함(안 제30조의3).
- ▶ 언론보도 등이 허위 · 조작보도와 관련성이 강한 경우 언론사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 는 것으로 추정함(안 제30조의4).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는 진보계열의 정의당조차 언론의 자유를 막는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7일 문체위 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회부되는 등, 더불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가 염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에 대해 3~5배에 달하는 징 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그러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누가담당해야 하는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소송남발과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를 두려워한 언론사들이 스스로를 감시 하게 되면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이 에 한국기자협회와 관훈클럽, 한국신문방송편 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 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8월 25일 새벽, 더불어 민주당은 이 법 안을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 과시켜버림으로써 국내외에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CREDO SIGNATURE



사단법인 크레도는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슈들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과 해설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사회의 존립 근거가 되 는 건강한 가정을 수호하기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CREDO SIGNAUTRE

사랍학교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책

신영철(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



2020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 갑)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1인 시 위를 하면서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기독 교 사립학교가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한국장로교총연합회/사학법인미션 네트워크가 8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낙선운동과 헌 법소원'도 언급하였다. 법안의 문제점이 무엇 인지 알아보고, 기독교 사립학교 관점에서 대 책을 논해보고자 한다.

Т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목적과 주요내용

윤영덕 의원은 법안의 목적과 주요내용에서 "현재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원 임용을 위한 ①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②채용비리가 생긴다며, ❸사립학교가 교원 인건비

등을 교육청에서 지급 받고 있고, ②고등학교 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③공교육 기 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⑤사립학교의 투명한 채용절차를 위해서 ⑦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법안 제53조의2제10항)고 밝히고 있다.1

П

사립학교는 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가?

공립학교와 다른 교육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립학교들이 만들어진다. 사립학교는 행정기관의 영향이나 지도를 받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사립학교에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을 당연시 하는 발상은 60~70년대 공립학교 부족으로 인해 사립학교들이 정발되면서 발생한 한국적 현상이다.

¹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10.8. 접수. 의안번호 210446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 K2Q0D1C0Y0A8B1P6B2G5O3Z9E7C4U8



Ⅲ 세금 지원을 받으니 사립학교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있다?

윤영덕 의원은 사립학교가 교원 인건비를 세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법안이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정부의 학생강제배정 정책에 따라 늘어난 교원 수에 따른 실비보상의 성격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정부가 시민단체에 용역을 맡기면서 비용을 세금으로 지불한다고 해서 시민단체의 채용을 주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시민단체들은 당연히 반발할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세금을 지급받는 모든 사업체나 단체에 대해 정부가 인사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을까? 그런데, 사립학교에만 그것을 당연시 한다는 것은 공정한 잣대가 아닌 것이다.

Ⅳ 사립학교 채용의 투명성을 위해서 교육감이 선발해야 한다?

1차 시험 전형을 교육감에게 맡기겠다는 또다른 근거는 채용에 비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립학교 채용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채용비리를 법적으로 근절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할 일이지, 정부나 지자체가 사적인 단체의 채용권을 가져가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령, 현대차에서 노조 자녀들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여² 현대차 신입사원 채용절차를 정부나 지자체장이 하겠다고 하면 민주노총이 받아들이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채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인사권을 국가가 가져갈 명분이 될수 있는가?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징계와 해고된 전교조 교사를 불법 채용한 사실을 감사원이 고발했다.³ 교육감에게 맡기면 투명해진다는 주장도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html?idxno=39284

² 현대차노조, '자녀우선채용' 단협조항 삭제키로해(2019.5.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 pg.aspx?CNTN_CD=A0002537493 3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

V

기독교 학교에 적합한 교사선발내용을 교육청이 필기시험지를 만들 수 있을까?

사랍학교가 교육청에 공개전형을 맡기는 비율은 2017년 38.5%에서 2020년 67%로 상승했다. 시달리기보다 순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일반 사립학교들은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 사립학교의 교사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교육청이 낸다면 그것이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청이 종교학교의 시험지를 만든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고, 기독교 학교에 기독교 관련 적절한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기독교 사립학교에 적절한 교사선발 시험지가될 수 없는 것이다.

또, 국가인권위나 교육감들이 기독교 사립학교에 '세례증명서' 등 교인임을 증명할 서류 제출을 금지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감에게 기독교 학교 교사 선발 시험을 맡길때에 기독교 학교 정체성을 해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VI 미국은 기독교 학교의 교사 채용권을 종교의 자유로 보장한다

미국 장애인 복지법 제103조 반증(defenses) 의 (c) 종교단체 항목은 ● 총칙에서 "이 장 은 종교상의 법인이나 협회, 교육기관 또는 단 체가 그와 관련된 사업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종파인의 채용우선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 다"라며 (2) 종교적 교리의 요건에서 "이 장에 서 종교단체는 모든 구직자 및 종업원이 그 단 체의 종교적 교리에 따라야 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은 종교활동의 하나이며, 기독교 학교들 도 그렇게 설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 국가인권위, 교육감, 정치인, 언론은 헌법의 ' 종교의 자유의 권리' 항목에 무척이나 각박할 뿐 아니라 무지한 실정이다.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종교의 자유의 권리 침해의 선봉장이기도 한 모순에서 국가인권위 원회의 불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국 에서 최근에 제기되는 기독교 복지시설에서 ' 종교적 기준'을 제거하려는 김상희 의원의 법 안 발의도⁵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인과 기독교 단체에 대한 인권 침해였던 것이다.

VII

향후 대책

● 교계는 중앙과 지역구별 연합회가 종과 횡으로 연대해서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장애인차별금지법등에 미국처럼 종교단체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더 이상 불합리한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 옹호교육 등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220조에 종교학교는 차별금지 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한헌법 때문)

② 특수목적학교 등은 학생이 지원하고, 그 가운데에서 선발하는 것처럼, 종교계 학교도 학생들이 선지원하도록 특수목적고와 같이 분류하도록 법안의 내용을 개정한다면, '학생이 학교 선택권이 없이 입학했으므로 모든 학생에게종교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강의석 판결의 제

⁴ 인권위 "교사 채용시 세례증명서 제출은 평등권 침해"(2015.7.8.)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5/07/650819/

⁵ 종교법인 운영하는 복지시설 종교강요 금지 법안 발의(2018.8.22.) https://www.nocutnews.co.kr/news/5019417

한도 풀리게 되는 것이다.

● 이것을 위해 교단들은 정당 대표들과 논의하고, 지역구 기독교연합회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교인들에게 그것을 지지하는 요청을 의원들에게 할 것을 교육하고, 신문광고와 SNS 광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해외의기준을 설명하고, 사립학교의 역사를 설명하는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하면, 그것이 갈등의합리적 해결책임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정치인들이 움직이게 된다.

[부록]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역사와 의미

구한말 정부는 왕실의 안위 보존에만 급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사들은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사립학교의 시작이다. 1908년경 전국에 4,000~5,000개교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고, 이후 일본 통감부의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1910년에 학부로의 설립 인가를 받은 학교 수가 2,250개교에 이르렀다. 1 우리나라 교육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가 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그 중심에 선교사들이 있던 기독교 학교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해방 후 일본인 교사들이 귀국하고, 한국전쟁 때 교사 자원들이 희생되었다. 1953년 휴전 후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졸업생은 넘쳐 나게 되었다. 그러나 나라는 가난하여 중고등학교를 만들 수 없었고, 가르칠 교사도 없었기에, 많지 않은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6학년생들이 자정까지 공부해야 할 정도였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1969년 중학교에 1974년 고등학교에 입시를 폐지하는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부족한 공립학교를 보충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들이 정발된다.

사립학교들은 저항했지만, 군사정권의 특성상, 또 학생들의 교육이란 대의명분 앞에 '학생을 선발할 권리'를 정부에 넘겨 학생 강제배정을 받아들이게 된다. 또 정부는 사립학교들에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의 등록금과 수업료 수준만 받도록 강요하므로 고통을 감내해야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1976년에 비로소 사립학교의 교원임금 부족분에 대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되기 시작했다. 일본도 사립학교에 학생을 강제 배정하는 정책을 취했지만, 종교계 학교는 건드리지 않았으나, 한국은 중고등 사립학교의 상당수가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미션스쿨들도 휘말려 가게 되었다.

1970년 부산의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 참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자, 기독교학교연맹은 나라의 재정이 건실해져 공립학교가 늘어나면 '학생선발권'을 돌려줄 것과 학교내 종교활동의 보장을 요구하였고, 문교부는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할 수 있으며, 불참하는 학생들은 교육감이 설득하여 참석하게 하겠다"며 정부의 시책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여(교행 125-5871970.6.17) 기독교 사학에서 종교교육의 권리는 인정되어² 강의석 사태 이전까지 한국의 근대화에 필요한 일군을 배출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다.

¹ 디지털의성문화대전 : 근대 교육 http://uiseong.grandculture.net/uiseong/toc/GC05201474

²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맹사 42주년, pp.101~114.

CREDO SIGNAUTRE

주디스 버틀러의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지지를 비판한다

EBS 교육방송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9월 21일 주디스 버틀러(젠더 트러블) 방송 비판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출처 LATFEM

트 마인즈', 9월 21일 방송은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의 저자)를 다루었다. 주디스 버 틀러는 소아성애를 지지하며 근친상간 금기를 해체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런데 소 틀러의 강의를 비판하는데 브라질 시민 36만 아성애와 근친상간 옹호가 교육방송인 EBS가 대중화시킬 수 있는 보편적 교육가치인가?

2021년 EBS 교육방송 '위대한 수업, 그레이 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2017년에는 버틀러가 브라질을 방문해서 강의하려고 할 때 "소이성 애 반대"라는 팻말을 든 시민단체의 강력한 저 항을 받기도 했다. 당시 소아성애 지지자인 버 명이 서명을 했다고 한다.

2010년부터 독일 교육계를 중심으로 독일 68 성혁명 운동의 소아성애적-남색적 과거사 청 산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소아성애의 비범죄 화를 주도하고 부분적으로 근친상간 금기 폐지 를 주장했던 독일 녹색당은 2014년 소아성애 운동과 관련된 과거사에 대해서 당대회에서 당 기를 해체하려고 한다.

버틀러가 계승하는 퀴어이론의 대부 미셀 푸코 도 최근 프랑스 해외석학 기 소르망 교수의 폭 로처럼 소아성애자 혹은 남색자로서 소아성애 를 지지하고 근친상간 금기를 해체하려고 했 다. 버틀러는 근친상간 금기가 동성애 금기를 생산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에, 근친상간 금 버틀러는 근친상간 금기와 동성애 금기를 "억압적 명령"으로 파악해서 그 억압적 명령인 근친상간 금기를 해체하고자 한다.¹ 근친상간 금기는 동성애 금기를 생산하는 기초와 근거이기에 동성애자 버틀러는 이를 해체하고자 한다. 버틀러는 레즈비언, 소아성애자 그리고 사도마조히스트로 커밍아웃한 게일 루빈을 인용하면서 근친상간 금기는 동성애 금기를 전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기에 이를 해체하고자한다. 버틀러는²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 인류학에서 말하는 근친상간 금기의 "문화적 영속성"을 수용하기를 거부한다.³

버틀러에 의하면 근친상간의 금지는 동성 애의 금지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욕망의 이성애화 (heterosexualization)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녀에 의하면, 근친상간 금기는 욕망 을 오직 이성애적인 것이라고만 보기 때문에 이성애 결혼제도를 영속화시키는 장치다. 즉 레비-스트로스에 의하면 친족구조의 핵심은 근친상간 금기다. 버틀러는 레비-스트로스의 근친상간금지의 규칙이 보편규칙이 아니라 이 성애 결혼제도를 영속화시키는 장치라고 보았 다. 버틀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인류학 은 중요한 금기로 '근친상간 금기'를 들지만, 이 '근친상간 금기'라는 설명방식은 그 이전에 선행하는 '동성애 금기'를 은폐하면서 '이성애' 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급

진페미니즘 학자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t) 도 "근친상간 금기를 가부장적 사유의 초석 중 하나"라고 보기에 해체하려고 한다.⁴

또한 버틀러는 그리스 비극작품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명백한 오독에 기초해서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지지하는 황당한 입장을 보인다. 국내 주류 그리스 고전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 비극은 (성)혁명문학이 아니라, 카타르시스 생산을 위한 그리스 폴리스 호국문학이었다(전남대 최혜영 교수). 몇주 전 tvN 방송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강의에서 서울대학교 그리스 고전학자 김 현 교수가 오이디푸스를 일종의 희생제물(희생염소, scapegoat)로 잘 분석했다.

버틀러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에 등장하는 어머니를 향한 아이의 근친상간 성욕망을 긍정하면서 소아성애를 지지한다. 5 "주디스 버틀러, 근친상간 그리고 아이의 사랑에 대한 질문"이라는 2010년 논문도 버틀러의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지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논문에 의하면 "버틀러는 (소아들의) 근친상간적 욕망들은 점차 발전해나가는 아이들의 섹슈얼리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버틀러의 입장은 근친상간을 아이들의 신체에 대한 잔인한 외부침입으로 파악해서 근친상간을 아이들 자신의 성욕망과 그 어떤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는 페미니즘적인 근친

¹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0), p. 65: "The taboo against incest and, implicity, against homosexuality is a repressive injunction which presumes an original desire localized in the notion of 'dispositions,' which suffers a repression of an originally homosexual libidinal directionality."

²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0), p. 73. "Hence, the incest taboo not only forbids sexual union between members of the same kinship line, but involves a taboo against homosexuality as well. Rubin writes: 'the incest taboo presupposes a prior, less articulate taboo on homosexuality."

³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0), p. 75.

⁴ https://planetwaves.net/astrologynews/blasius.html

⁵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2007).

상간 이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다."⁶ 즉 근친상간을 아동 성폭력으로 파악하는 기존 페미니즘과는 완전히 다르게 버틀러는 아이들의 성욕망을 강조함으로 소아성애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소아성애자들이나 소아성애 지지자들의 전형적인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이다.

에 더 방점을 두어서 성인들에 의한 아동 성폭력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 푸코와 같은 많은 동성애적 소아성애자들(남색자들)은 소아들도 성적인 존재로서 성욕망과 오르가즘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해서 자신의 소아성애 파트너로 만든다.

또 다른 동성애적 소아성애자 혹은 남색자인 미셀 푸코도 1979년 강의에서 성인을 유혹하 는 아이들의 성욕망을 주장함으로써 소아성애 적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 푸코는 1979년 미 셀 푸코가 "반-소아성애 히스테리아"라는 방송과 글을 통해서 "소아 매춘" 에 대해서 말하면서 소아들은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정신분석학자들과 정신의 학자들의 입장을 오히려 공격하면서 "성인을 유혹하는 소아들의" 성욕망을 주장하고 있 다. "아마 자신의 고유한 섹슈얼리티를 가진 아이가 성인을 욕망했고, 성관계에 동의했고, 심지어 (소아성애적 성관계)의 첫 걸음을 주도 했다"고 푸코는 말한다.7즉 푸코와 버틀러와 같이 소아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은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의 상위에 존재하는 성인 보다는 종 속되어 있는 아이들의 소아성애적이고 근친상 간적인 성욕망과 아이들에 의한 주도과 유혹

소아들의 성욕망을 강조하는 소아성에 지지자들의 입장은 하르트무트 폰 헨티히 교수에게도 발견된다. 독일 "교육자들의 교황" 혹은 "교육계의 교황"(Pädagogenpapstes)이자독일 68 반권위주의적-안티파적 "개혁교육의 교황"(der Papst der Reformpädogik)으로 평가되는 하르트무트 폰 헨티히(Hartmut von Hentig) 교수는 독일 전 대통령 리하르트 폰 바이처제커(Richard von Weizsäcker)와 깊은 관계를 가진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학자다.

헨티히 교수는 독일 68 진보교육의 성지로서 3미터 높이의 거대한 남근상을 상징으로 세웠던 오덴발트 슐레의 교장인 게롤드 베커가 주도한 몇 십년간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소아성에/남색 아동 성폭력 사태에 연루된 것이 2010년 이후 폭로되면서 그 이전에 받았던 다수의 영예로운 상들을 박탈당했다.

헨티히 교수는 이 상습적인 소아성애자 혹은 남색자인 게롤드 베커와 동성애적 동반자로서 평생 함께 한 사람으로서 게롤드 베커의 아동 성폭력을 변호하기 위해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 들인 어린 학생들의 성욕망, 유혹 그리고 주도 를 강조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헨티히 교수는 국내 김누리 교수 등이 찬양하

^{6 &}quot;Bezogen auf diese Debatte ist Butlers Position eindeutig: Sie betont, dass inzestuöse Sehnsüchte Teil der sich entwickelnden kindlichen Sexualität sind und damit ist Butlers Denkweise durchweg gegenläufig zu jenem feministischen Verständnis von Inzest (etwa bei Hermans), das diesen als 》brutale Fremdeinwirkung auf den kindlichen Körper《 begreift: als ein Ereignis, das nicht im Geringsten etwas mit den eigenen sexuellen Bedürfnissen des Kindes zu tun hat. '(앞에서 소개한 논문 JE, Kilby, 'Judith Butler, incest, and the question of the child's love"의 독일어 번역본으로는 독일 '작과 정치와 학문을 위한 좌파넷'(Linksnet, Für Linke Politik und Wissenschaft)에 실렸다: https://www.linksnet.de artikel/26240)

^{7 &}quot;Perhaps the child with his own sexuality desired the adult, perhaps consented, perhaps even initiated the first steps. We can admit that it was the child who seduced the man, but our psychological insight assures us that the seducing child will undoubtedly be damaged and traumatized by having had an affair with an adult." (Michel Foucault is Professor at the College de France. Translated by Daniel Moshenberg. Excepted from "Dialogues," a French radio program produced by Roger Pillaudin and published by Recherches, April 1979. from SEMIOTEXT(E) SPECIAL, Intervention Series 2: Loving Children, p. 44ff.)

는 독일 68 교육혁명, 개혁교육 그리고 진보교육을 게롤드 베커와 주도하면서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소아성애/남색을 정당화하는 '교육학적 에로스' 개념을 진보교육 교육원리로 주장하였고, 소아성애적이고 남색적 강간을 범한 게롤드 베커를 여전히 변호하고, 그의 아동 성폭력을 미화하고 은폐하고 있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프랑스 시몬 드 보부아르와 장 폴 사르트르와 깊은 관계를 가졌던 독일 페미니즘의 원조 알리체 슈바르츠(Alice Schwarzer)는 2010년 헨티히 교수가 소아성애적 혹은 남색적 강간을 범한 게롤드 베커를 변호하면서 그 아이들이 오히려 선생인 게롤드 베커를 성적으로 유혹했다고 주장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⁸ 독일 바이에른 주 법무부 장관도 헨티히 교수의이러한 소아성애적 아동 성폭력에 대한 미화와 책임회피에 대해서 최근 경고했다.⁹

2021년에는 독일 "성교육의 교황"인 헬무트 켄틀러(Helmut Kentler) 교수의 소아성애 실 험을 고발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서가 출 간되었다.¹⁰ 김누리 교수는 독일 68 성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으로 주장하면서 국내 교 육계에서 많이 강의했는데, 독일 최초로 그리 고 가장 대표적으로 독일 68 성교육을 정치교 육으로 파악하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헬무트 켄틀러 교수였다. 동성애자 켄틀러 교수는 집 없는 아이들을 15년 동안이나 소아성애자들 에게 넘겨 주어서 일종의 '다양한 가족'(퀴어 가족)을 구성하게 했는데, 그 아이들은 소아성 애자들 혹은 남색자들의 성노예처럼 수십년간 살았고. 오덴발트 슐레의 경우처럼 어린 시절 의 성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자살한 경우도 발생했다고 한다.

퀴어이론은 본질적으로 소아성애적이라고 전 제하면서 퀴어 이론과 소아성애의 깊은 관계를 분석한 논문도(The Trojan Unicorn: QT and Paedophilia), "현대 퀴어 이론의 구루 주디스 버틀러가 근친상간을 변호했다"는 제목으로 버틀러의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지지를 비판적 으로 분석했다.¹¹

2017년 독일 교육학 학회(Die Deutsche Gesellschaft für Erziehungswissenschaft) 는 "교육학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맥락 속에서 본 교육학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독일 68 진보교육의 성지인 오덴 발트 슐레에서 발생한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소 아성애/남색 아동 성폭력 그리고 이곳과 관련된 독일 "교육계의 교황"이자 독일 전 대통

⁸ https://www.aliceschwarzer.de/artikel/aus-liebe-154351?fbclid=liwAR3dVMF0FDNr1-YpgaGQhoq7bx8BJL5Vd 5XyChrJqjBmMQacTOGUgqqFRuU; https://www.beltz.de/fileadmin/beltz/ leseproben/978-3-7799-2929-1.pdf

⁹ https://www.justiz.bayern.de/presse-und-medien/pressemitteilungen/archiv/2010/40.php

¹⁰ Teresa Nentwig, Im Fahrwasser der Emanzipation? Die Wege und Irrwege des Helmut Kentler (Göttingen: Vandenhoeck&Ruprecht, 2021)

¹¹ https://uncommongroundmedia.com/the-trojan-unicorn-qt-and-paedophilia-part-iv-dr-em/



령과 "마피아처럼" 깊은 관계를 가진 하르 문에 반영된 소아성애자 미셀 푸코의 성담론 트무트 폰 헨티히 교수의 소아성애/남색 사태 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 연루 그리고 또한 독일 68 '성교육의 교황' 인 헬무트 켄틀러 교수의 소아성애 실험 게이 동보호와 성학대 방지를 정말로 소아성애자들 트 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 독일 68 교육혁명의 소아성 독일 68 성교육의 교황인 헬무트 켄틀러 교수 애 과거사 청산이 대세다. 2010년부터 독일에 의 소아성애적 성교육이 반영된 독일 로마 가 서는 소아성애와 남색 운동의 어두운 그림자인 아동 성폭력에 성찰이 대세다. 이처럼 현 정부 다. 가 교육개혁의 모델로 많이 생각하는 독일 진 보교육계도 2010년 이후부터 독일 68 성교육 의 소아성애적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깊 대한민국 교육방송 EBS가 소아성애와 근친상 게 반성하고 있다.

미셀 푸코의 소아성애 혹은 남색 사태에 대한 폭로로 인해서 2021년 4월 독일 출판사(Der 이었던 미셀 푸코 연구서에 대한 출간을 연 기했다. 2021년 독일 학부모협회는 독일 로마 가톨릭 교회 아동학대방지에 대한 공식 입장

트팔렌주 학부모협의회도 올해 "당신들은 아 과 가까운 성교육자들에게 맡기려고 하십니까 ?" 라는 제목을 가진 독일 주교협의회에 보내 는 공식 서한을 통해서 푸코의 성담론과 또한 톨릭 성교육 교제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

간을 지지하는 방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은 결코 교육방송 EBS가 대중화시킬 수 있는 보편적 교육가치가 아니 다. EBS는 버틀러가 계승하고 있는 68 '소아 성애적 안티파' 성혁명 사상의 최대 피해자들 Verlag Kiepenheuer & Witsch)는 출간 예정 이자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감수성 있게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CREDO North Korea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크레도는 전환기 정의구현,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탈북민의 정착지원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교육하 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CREDO NORTH KOREA

Considering Human Rights in Aid to North Kroea: A Rights—based Approach for the United Nations

(대북지원에 있어 인권에 대한 고찰: UN의 인권기반 접근법)



Amanda Mortwedt Oh

Amanda Mortwedt Oh, an American lawyer, finished Master of Laws in International Law (LL.M) from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at Tufts University and now works at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located in Washington, DC, as the Director of International Advocacy and Development.

아만다 모트워트 오 미국 변호사는 터프츠 대학교 플레처스쿨에서 국제법 법학석사를 마치고 현재 워싱턴D.C에 위치한 북한인권위원회에서 국제변호 및 개발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In 2013, then United Nations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human rights up front" (or HRuF) approach. The Secretary-General called for a UN system-wide strategy when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e found in a country, through this HRuF approach. All UN agencies and offices were expected to become involved to advance human rights on the ground, provide candid information, and develop a common UN system for information.1 The following year,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COI) recommended the immediate application of the HRuF strategy for North Korea "to help prevent the recurrence or continua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2 As such, the UN should keep human rights up front when considering and conducting its important operations in North Korea, which include the provision of food aid, medical supplies, and hygiene and sanitations projects, to name only a few.

2013년,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기반(HRUF)" 접근 개념을 도입하였다. 반 사무총장은 한 국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견되는 경우 이러한 "인권기반(HRUF)" 접근을 통한 유엔체제 차원의 전략을 요구했다. 모든 유엔기구와 사무소는 지상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거짓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공유를 위한 공통 유엔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참여하도록 기대되었다.

이듬해,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 사위원회(UNCOI)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의 재발 또는 지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 에 "인권기반(HRUF)" 전략을 즉각적으로 적 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유엔은 북한에 서 식량 및 의료용품 지원, 위생 및 보건 사업 과 같은 중요 활동을 고려하거나 실행할 때 인 권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한다.

^{1 &}quot;Rights Up Front," May 2014, http://www.un.org/sg/rightsupfront/doc/RuFAP-summary-General-Assembly. htm: see also Roberta Cohen, "Must UN Agencies Also Fail in North Korea?," 38 North, April 21, 2015, https://www.38north.org/2015/04/rcohen042115/#_ftn2.

²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CRP.1, para. 1225(g), February 7, 2014,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Pages/CommissionInquiryonHRinDPRK.aspx.

The UN, by way of Member States, has long recognized that human rights are vital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ftermath of two world wars, nation states decidedly and determinatively came together in 1945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and "reaffirm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as the Preamble of the UN Charter declares.3 While these statements do not reflect all the important issues covered in the UN Charter, the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was a central focus of this document intended to combine efforts across the world to promot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Nations better understood the meaning of collectively valuing human rights after experiencing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of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when such rights were egregiously violated.



유엔은 회원국들을 통해 인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의 여파를 겪은 주권 국들은 1945년 유엔 헌장 서문에서 선언하였 듯 "전쟁의 재앙에서 다음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는데 결정적이고 단호하게 협력했다. 비록 이러한 성명서가 유엔 헌장이 다루는 모든 중요한 문제를 반영하지는 않지만, 인권에 대한 중요성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결합시키는 본 문서의 중심 초점이 되었다. 국가들은 인권이 잔혹하게 침해되었던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의 참담한결과를 경험한 이후 집단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를 더 잘 이해했다.

³ United Nations,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Preamble, June 26, 1945 (into force October 24, 1945) https://www.un.org/en/sections/un-charter/preamble/index.html.



In the case of North Korea, a place with critical and urgent humanitarian needs, the UN has five partner agencies-(1) World Food Programme (WFP), (2)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3)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4)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and (5)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UNFPA)-that are coordinated by the Humanitarian Country Team (HCT) of its DPR Korea Office.4 In its most current 2020 Needs and Priorities Plan, the UN DPR Korea Office stated its number one strategic objective is to "[r]educe morbidity and mortality from malnutrition of the most vulnerable people with an integrated, community-based approach and improve equitable access to quality essential health services" (emphasis added).5 "The most vulnerable people" implies a concern for those people who are in particular suffering or more likely to suffer because of their precarious status. Arguably, it also conveys an interest in the marginalized and targeted (the vulnerable) inside the country so that more resources may be effectively leveraged to provide these populations with the resources needed

인도주의적 요구가 중요하고 시급한 북한의 경우, 유엔은 (1) 세계식량계획(WFP), (2) 유엔개발계획(UNDP), (3)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4) 유엔아동기금(UNICEF), (5)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과 같은 5개의 협력기관을 두고 있고, 이들의 활동은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사무소의 인도주의적 국가팀(HCT)이 조율한다.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사무소는 최근 2020년 필요 및 우선순위 계획서에서 "통합 지역사회 기반 접근 방식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률을 줄이고,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개선하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 전략 목표라고 하였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라 함은 그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특별한 고통 받거나 더욱 고통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우려까지 함축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는 또한 국가 안에서 소외되고 표적이 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이들의 생존에 필요한 더 많은 자원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한다.

to survive

⁴ This information is dated as of April 2020, without consideration of COVID-19-related reporting on the restrictions imposed on UN agencies in North Korea and their departure from the country. See United Nations DPR Korea,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20, April 2020,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2020_DPRK_Needs_and-Priorities_Overview.pdf.

In North Korea, "the most vulnerable people" are often those heavily discriminated against by Kim Jong-un's regime, meaning those with low songbun (socio-political classification), those judged to be political criminals, or those seen as disloyal or traitors to the country for other reasons. According to the UN COI's findings from February 2014, prisoners, for example, are held in a grossly unjust and inhumane detention system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conclude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occurred and are occurring against them. The Kim family considers certain persons, who it sends to political and sometimes other prison camps, to "pose a threat to the political system and leadership" of the State.6 For example, a political prisoner (and her family) in North Korea is one of the most vulnerable, as she is tortured, disappeared, and inhumanely treated in deplorable prison conditions because of her perceived lack of loyalty to the Kim family. This means she has an insufficient supply of food and medicine, with no hope of having family members visit the political prison camp (kwan-li-so), and almost certainly suffers from malnutrition and disease in detention as well as beatings or sexual-related assaults. This political prisoner is highly likely to die early and in detention because of being view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as disloyal,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출신 성분 (사회-정치적 분류)이 낮거나, 정치범 판결을 받거나, 기타 이유로 북한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거나 배신자로 여겨지는 사람들로, 이들은 종종 김정은 정권의 심한 차별을 받는다.

2014년 2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결론지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는 매우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구금 시스템에 수감되어 있다. 김 씨 일가는 특정한 인물들을 정치범 수용소 내지 기타 수용소로 보내며, 이들을 체제의 정치시스템과 리더십의 위협으로 가주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정치범(및 그의 가족)은 김 씨 가문에 대한 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 문당하고 실종되고 개탄스러운 수감 환경에서 비인간적으로 취급되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이다.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가족들 이 찾아올 희망을 가질 수조차 없고, 영양실조 와 질병으로 고통을 겪거나 구타나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러한 정치범 은 북한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여겨진 이 유로 구금시설에서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매 우 높다.

⁶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63, para. 77, February 7, 2014,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Pages/CommissionInquiryonHRinDPRK.aspx.

Because political prisoners, by way of example, are viewed as political offenders of the North Korean State, UN agencies may be reluctant to mention this group of highly vulnerable people. Even organizations with the best intentions and with the most experience may prefer to "keep politics out of aid" in an effort to accomplish their mission and work within the confines of the State. It is in this way that characterizations of basic human rights issues framed as political ones may ieopardize vulnerable people's opportunities to receive humanitarian aid from the UN and others. It is this divergence betwee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id that also undermines the determination set forth early in the UN Charter's Preamble to affirm faith in human rights. This also fail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HRuF approach in North Korea called on by then Secretary-General Ban.

예를 들어. 정치범들은 북한체제의 정치적 공 격자로 간주되기에, 유엔기관들은 이렇게 극 도로 취약한 그룹에 대한 언급을 주저할 수 있 다. 가장 좋은 의도와 가장 경험 많은 단체들조 차도 그들의 임무와 일을 국가의 테두리 안에 서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원조 에 있어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기본적 인권 문제의 특성이 이런 식으 로 정치적인 것이라고 프레임이 씌워지면 " 취약한 사람들"이 유엔 및 기타 기관의 인도 적 지원을 받을 기회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인 권과 인도적 지원 간의 이러한 간격은 일찍이 인권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였던 유엔 헌장 서 문이 선언한 결단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는 반 사무총장이 촉구한 인권 기반 접근을 북한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한다.

In February 2020, UN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stated in his remarks
and Call to Action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at "[h]uman rights permeate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 human-rights based approach
"delivers development that is more lasting
and inclusive." 7 Calling HRuF an important
initiative, Mr. Guterres remarked that his Call
to Action would "enhance[e] human rights
analysis and expand[] the presence of Human
Rights Advisors within UN Country Teams."

2020년 2월,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 장은 유엔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인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에 스며들고 있다"면서 인권기반적 접근이 "더 지속적 이고 포괄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며 행동을 촉구하였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인권기반(HRUF)접근이 중요한 이니셔티브라면서 이러한 행동 촉구가 "인권 분석을 강화하고 유엔 국가 팀 내 인권자문단의 존재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⁷ António Guterres, "Remarks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Highest Aspiration: A Call to Action for Human Rights,'" February 24, 2020, https://www.un.org/sg/en/ content/sg/speeches/2020-02-24/human-rights-councilremarks-the-highest-aspiration. See United Nation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a. 8, https://sustainabledevelopment. un.org/content/documents/21252030%20Agenda%20 for%20Sustainable%20Development%20web.pdf: "A just, equitable, tolerant, open and socially inclusive world in which the needs of the most vulnerable are met;" also para 10: "The new Agenda is guided by the purposes and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full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t is ground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Millennium Declaration and the 2005 World Summit Outcome. It is informed by other instruments such as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In implementing HRuF, the UN will help ensure the most vulnerable people receive necessary aid and relief that they so need.

Through donors, it is the U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edication and resources that can improve people's lives on the ground in immediate and direct ways.

Without question these issues are complex and challenging, yet it is essential that the UN implement the HRuF approach.

유엔은 인권 기반(HRUF) 접근을 실천하면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원조와 구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부자들에 의하여, 즉각적이고 직접적 방법으로 지상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유엔(및 시민사회단체들)의 헌신과 자원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문제들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유엔이 인권기반(HRUF) 접근을 실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As of now,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HRuF is being considered or implemented in North Korea. Due to COVID-19 and the North Korean regime's restri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coronavirus, UN agencies have been impacted in country and are operating at a much-reduced capacity. When COVID is no longer a major hurdle, though, a plan of action and an impact assessment should commence to adequately consider human rights in the delivery of UN humanitarian aid.

현재로선 북한에서 인권기반(HRUF)접근을 고려하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지켜볼 일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북한 정권의 제한적 조치로 인해 유엔 기구들은 북한 내부에서 타격을 받아 훨씬 더 축소된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주요 장애가 되지 않는 때가오면 유엔이 인도적 원조를 전달하면서 인권을 적절히 고려하는지에 대한 행동계획 및 영향 평가가 시작되어야 한다.

Member States contemplate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seventy-six years ago as they sought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refore, prevent another world war. As such, the UN must address the ongoing commiss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by effectively implementing an HRuF approach. Not only will the UN HCT in the DPRK Korea Office be able to actively support the most vulnerable in North Korea with this approach, but it may be able to help prevent the erosion of peace and security.

76년 전 유엔회원국들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추가적 세계대전을 방지하도록 인권 의 중요성을 숙고하였다. 이처럼, 유엔은 인권 기반(HRUF) 접근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여 북 한에서 계속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처하여야 한다.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사무 소는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북한에서 "가장 취 약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평화와 안보의 악화를 막을 수 있 을 것이다.

CREDO NORTH KOREA

유엔

"북한 경제 개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충족 될 때 실현 가능"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토론 보고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1 년 8월 25일, 한국 정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 린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2021년 8월 31-9월 2일)' 토론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공 개했습니다.

'발전권이 북한과 여타 유엔 회원국에 갖는 시 사점'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이하, '유엔 보고 서' 라고 함)는, 북한이 시민적, 정치적,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장의 일차적 의무 주체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강조하는 경제 개발 역시 인권 보장과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 으며,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충족될 때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발전 개념에 대한 좁 은 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보, 발전, 인권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발전권을 기 반으로 모든 기본적인 권리의 실현을 통해서 발전, 평화, 안보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 으로 달성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보고서는 "유엔총회가 지난 1986년 채택한 '발전권에 관한 선언'에 기초하여, 발전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모두가 실현될 수 있는 과정이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의 모든 가입국에게각 권리의 최소 필요수준을 충족시킬 최소 핵심의무가 있으므로, 국가는 발전권 실현을 위해 모두에게 기초 자원, 교육, 보건 서비스, 식량, 주거, 고용,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균등한 접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북한 역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가입국으로서 각 권리의 최소 필요수준 을 충족시킬 최소 핵심 의무가 있음"을 언급하 며, "만약 상당수의 국민이 필수적인 식량이 나 필수적 기본 의료, 주거, 가장 기초적 형태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언뜻 보기에도 최소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자원 부족으로 최소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우선적으로 이러한 최소 핵심 의무 이행을 위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자원 활용에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유엔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등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이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고, 보건 의료 접근성은 지방 거주자의 경우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산모 사망률이 높고 설사와 폐렴을 주요 원인으로 5세 미만 아동이 사망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은 교육을 지속할 수 없고, 깨끗한 물과 위생 접근성의 부재로 수인성 질병이 북한 주요 사망 원인 중하나이며, 급성 영양실조의 기저 요인이 된다"고 언급하며, 북한의 최소 핵심의무 이행에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발전권은 시민적 권리 및 정치적 권리를 포함하여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무 전반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므로, 국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발전 저해 요소를 제거하는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개발 정책은 발전의 핵심 주체이며, 능동적인 참여자이자 수혜자인 사람이 개발에 적극적으로 자유롭고 유의미하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별히 여성이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의 당

사국이지만, 국제사회가 민주적 참여의 핵심인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가 북한 내에서 침해되는 혐의에 우려를 표해왔다"면서, "자유로운 언론을 통한 대중인식 고취 등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가 보장될 때 자원 생산과 배분이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식량권을 포함한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이 인도적 활동가들의 접근성을 제한하여, 북한 내 인도주의 단체가 세운 2020년 기준 유엔 기관 지원 목표액의 28퍼센트만이 모금되는 등 충분한 운영 자금을 모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포용력 있고 공정하며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도입"할 것과 "비공식 시장 제도가 지속가능하며 포용력 있는 식량 안보를 실현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법적 및 제도적 틀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국가는 최소한 노동자의 처우 나 조건, 공정한 보상 등과 관련하여 국제 인 권 의무를 저버리는 교역 및 투자에 대한 합의 를 맺지 않아야하는 의무가 있고, 개인이 상행 위 등을 통해 적절한 식량에 접근하고자 할 때 직간접적으로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는 국 제공동체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보장 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북한은 군사 및 핵 역량 강화를 우선시함으로써 발전권 실현 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의 양에 명백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방비 지출 을 조정하여 국민의 복지에 적절한 자원이 쓰 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 였습니다. 나아가, "북한 관련 논의는 평화 및 안보, 발전, 인권 등의 의제가 모두 각개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발전의 개념을 좁게만 해석하는 것도 이러한 동떨어진 논의를 부추긴다"면서, "발전권은 이러한 개념을 확대하고, 각개로 논의되는 평화 및 안보, 발전, 인권을 한데모아,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가 침해될 때 상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모든기본적인 권리의 실현을 통해서만 발전, 평화, 안보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북한이 발전권을 포함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자체적인 제도적, 사법적 및 정 책적 틀의 개혁을 시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관심을 집중하고, 발전권을 유용한 틀로 활용하여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관여 및 외교 정책을 수립할 때 다른 국가와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전문

https://seoul.ohchr.org/EN/Documents/2021/ RtD%20Discussion%20Paper%20-%20Kor.pdf





20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늘 아파온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많이 아프셨다. 셋째언니의 병간호를 하시던 어머니는 결국 자신도 결핵 진단을 받고 5년 동안 약한번 링거 한 번 제대로 못써보고 너무도 불쌍하게 세상을 떠나셨다. 내 나이 열여덟, 어머니 나이 48세였다.

어머니는 제일 견디기 힘들다는 보릿고 개라고 불리던 6월에 돌아가셨다. 북한 에서는 단오가 지나면 풀을 먹으려 해도 모든 풀에 독이 올라 먹기가 힘들고 농 사지은 감자도 열매를 맺기 전이라 보릿 고개라 부른다.

かきむをい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의 일이 다.

학교에 가겠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여동생과 막내 남동생이 돌아오질 않는 다. 학교에서는 등교하지 않았다고 연 락이 오고 동생들은 행방이 묘연한 채 이틀이나 감감 무소식이 되었다. 아버 지와 언니들의 걱정이 커졌다.

아버지는 집안에서 빨래방망이를 찾아

옆에 놓고 두 동생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어린나이에 벌써 가출을 했다며 두 들겨 패려고 벼르시는 것이었다.

그 날 오후, 두 남매가 두려워하는 얼굴로 눈을 두리번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남동생의 손에는 철사 줄에 줄줄이 매달린 뭔가가 들려있었다.

화가 잔뜩 난 아버지는 동생들을 향해" 어딜 돌아다니다 오느냐?"라며 소리치 셨다. 그러자, 여동생은 놀라서 구석으 로 도망가 숨고, 남동생만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풀 끓인 물에 영양가 없는 밀가루 죽만 드시는 게 마음이 아 파서 개구리라도 잡아오겠다고 생각했 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어린 남동생은 개구리가 풀죽보다 나은 것 같아 누나에게 학교가지 말고 개구리를 잡으러 가자고 했다며, 누나의 잘못이 아닌 자신의 잘못임을 고백하고 있었다. 어린 동생들이었지만 대소변을 받아내는 어머니에게 이미 희망이 없음을 알아차리고,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에 학교도 빠지고 개구리 잡이에 나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밖으로 뛰쳐나가시고, 어머니는 방에 누워서 울고 계신다.



김보빈

함경북도 새별군에서 출생하였다. 생계를 위해 탈북을 감행하였다는 이유로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2년의 형을 마치고 2012년 6월 탈북에 성공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2남 2년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다.

아버지의 충선심과 무기력함

사실 아버지의 괴로움이 더욱 컸다.

어머니가 오랜 시간 병을 앓아도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 이다. 이 당시 아버지는 당원이셨기에 하 루라도 출근을 안하면 생활총화에서 비 판을 받았으며, 기업소모임에서 사상투 쟁회의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 늘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당에 충실 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가정보다 국가에 더 충실하셨다. 하지만, 집에 불이 나도 김씨 일가의 초상화를 먼저 건져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당과 수령과 조국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매일같이 세뇌교육을 받았던 당시로서는 가정보다 국가가 먼저인 아버지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세뇌 교육은 자기 아 내도 지켜줄 수 없었고 어머니는 결국 세 상을 떠나고 말았다.

<u> 먹고싶은 사과 한 알</u>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아침,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가 옆으로 다가가니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시며 사과가 먹고 싶다고 말씀하신다.

이 당시 사과 한 알에 5원이었지만 우리 집에는 이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었다. 나는 급한 마음으로 이집 저집 다니며 사과한 알 살 수 있는 돈을 빌리려 하였지만 빌릴 수가 없었고 가까운 친구에게서조 차도 빌릴 수가 없었다.

고난의 대행진이 북한 땅을 휩쓸고 있었다.

모두가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 누구를 도 외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너무나 가 난한 살림이니 빌려 줘도 받지 못할까 걱 정이 되었고, 빌려주면 오히려 자기네가 굶어야 하니 섣불리 빌려 주지도 못한다.

벌써 시간은 퍽이나 지나 오후 1시경이 되었다.

반나절을 돌아 다녀도 나는 그 작은 돈을 도무지 빌릴 수가 없었다. 마침 동네를 돌 고 돌아 정미소 앞을 지나는데 창문턱에 놓인 돈지갑이 보인다. 나도 모르게 눈길 은 돈 있는 지갑을 살펴보게 되었다.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니 아무도 없어, 지갑에 들어있는 많은 돈에 서 사과 한 알 살 수 있는 5원짜리 한 장을 꺼냈는데 그만 주인 집 둘째 아들에게 들 키고 말았다.

그는 다짜고짜 도적놈이라고 소리 지르 며 부모에게 일러 대었다. 주인 부부가 달려와서 도적놈이라고 나 남은 주사액을 가리키며 나보고 놓아달 를 때리기 시작한다 온 몸에 피멍이 들도 록 맞고 돈도 뺏겼다.

나는 "병든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사과 한 알이라도 사드리려고 돈을 훔쳤 다"고 사실대로 말하였지만. 통하지 않았 다.

정미소 주인은 앳된 여자아이에 불과한 나를 올려 차고 내려 찼다 나는 길거리에 서 이러한 수모를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 고 퉁퉁 부은 얼굴로 종일 돈을 구하러 다 녔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 내 어머니에게 드릴 사과 한 알을 사드릴 수 없었다.

힘없는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동안 어머니를 생각 할수록 마음이 아팠다. 집 옆에 흐르는 냇가에서 얼굴을 씻고 집으 로 들어갔지만 벌써 어머니는 모든 사실 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를 보며 눈물만 흘리실 뿐 아무 말씀도 못하셨다

에어니의 마지막 부탁

초저녁이 되자. 어머니의 행동이 좀 이상 하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누워있는 머리 위벽에는 호랑 이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어머니는 나더 러 "저 호랑이가 엄마 데리러 왔다"고 말 하신다.

먹다 남은 죽물도 드시겠다고 하시고 엉 덩이 근육주사도 다 놓아 달라고 하시고 라고 하셨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전해졌다.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남동 생은 친척집에 이 사실을 알리려 나가고 언니들은 어머니가 무서워 방에 들어오 지 못한다.

임종이 다가왔음 알아차린 언니들은 이 불 안감을 뜯어 수의를 준비했다. 어머니 는 언니들이 이불 안감을 들고 다니는 것 을 보시고 욕을 하시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평소에 욕을 잘 하지 않는 분이 었다. 아버지는 술을 좋아 하셔서 술만 드 시면 육형제에게 큰소리로 동네가 떠나 갈 듯 소리를 쳤지만, 어머니는 늘 조용 한 편이였다. 그러던 어머니가 언니들에 게 욕을 하니 이상하기는 했지만 설마 오 늘 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라고는 꿈에 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나를 보고는 웃으 시면서 "아빠 말 잘 듣고 동생들 잘 살피 라"고 하신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서 " 여보 넷째를 너무 욕하지 마세요. 이젠 넷 째를 믿어야 해요 "라고 하신다 넷째는 바로 나였다. 내 위로 언니가 3명이 있었 지만 어머니는 어찌된 영문인지 나에게 동생들을 부탁하셨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고 가 만히 나와 흐르는 시냇물에 두 눈을 닦으 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시냇물에 함께 내 려 보낸다

아버지의 축 처진 두 어깨는 이미 깊은

슬픔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세차게 들썩거렸고, 물소리가 아무리 철렁거려 도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는 감출 수 없 었다

에어니의 죽음

어머니는 저녁 8시 경 끝내 눈을 감고 말 았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막내 남동생을 찾 았지만 남동생은 어머니의 소식을 전하 려 친척집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해 어머 니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 드리지 못했다. 늦게 돌아온 남동생이 큰소리로 엄마를 불러 보았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온가족이 울고불고 동네가 떠나갈 듯 목 놓아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사과 한 꾸 러미를 들고 집안으로 들어온다. 5원을

훔쳤다고 온 힘을 다해 나를 도적놈이라 고 때렸던 그 정미소집 주인이었다.

그가 누군지를 알아 본 나는 그 사과 꾸 러미를 밖으로 집어 던지며 그 사람을 밀 쳐 버렸다

"사과 한 알이면 되는데... 한 알이면 되 는데..!!이한 꾸러미 필요없다고!"나는 소리를 질렀다.

수의에 쌓인 어머니를 수레에 모시고 우 리는 마을 뒷산에 올라 집에서 멀지 않은 높은 언덕에 모셨다. 어머니의 고향인 중 국 훈춘이 멀리 보이는 높은 언덕이었다.

사과 한 알도 못 드시고 결국 세상을 떠나 신 어머니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마감하 였고, 때마침 7월 초 장마 빗줄기가 멈추 고 해가 떠올랐다

그 이후로 나는 오랫동안 사과를 입에 대 지 않았다.





밤마다찾아난모지

비록 병을 앓고 계셨지만 그런 어머니라 도 있을 땐 집안에 웃음기가 살아있었다. 어머니가 떠난 후로는 웃음이 없어지고 온 집안이 적막하기만 했다.

더구나 장례를 마치고 우리 식구는 닷새 내내 풀물조차 먹지 못하고 굶은 채로 누 워만 있었다. 언니들은 죽고 싶다고 그냥 눈물만 흘렸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 과 가족의 굶주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도 지쳐보였다.

이대로라면 모두 죽어갈 형편이었다.

그렇지만 누군가 찾아와서 힘을 내 살아 야 한다고 말해주는 이가 한사람도 없었 다.

지쳐 죽어가는 이때, 나에게 돌아가신 어

머니가 찾아오셨다. 어머니는 왜 누워만 있냐고 어서 일어나 힘을 내라고 했다. 엄 마는 늘 나를 지켜본다고 말씀 하시는 것 이다.

너무 놀라 정신 차리고 보니 꿈이었다. 그런데 내가 집이 아닌 엄마 묘지 옆에서 일어난 것이다. 거기서 온밤을 누워 자다 가 꿈에서 어머니의 음성을 들었던 모양 이다.

나는 벌떡 일어나 정신을 차렸다. 내가 언제 산으로 올라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잠에서 깨어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나를 찾아다니는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을 만 났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이상하다는 듯 어디를 온밤 헤매다가 들어오느냐고 물 어보신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냥 놀라서 깨어나 보니 엄마 묘지 옆이었어요."

이후로 아버지는 내가 밤에 일어나 화장 실에 가면 꼭 나를 정신 차리게 하셨다.

다음날, 나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 소랭이와 칼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어머니 말씀대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다짐을했다. 미나리를 캐서 집으로 돌아와 풀죽을 쑤었다.

나의 성화에 우리 가족들은 하나 둘씩 일 어났고, 그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

엄마가 사망한지 몇 년도 되지 않아 오랫동안 결핵을 앓고 있던 셋째 언니마저도 사망하였다. 두 식구의 죽음은 우리 가정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왔다. 마지막 가는 두 사람을 위해 남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나를 낳아 준 어머니에게조차도 사랑한다는 이 한 마디를 말해본 기억이 없다. 그럼 아버지나 형제 자매에게는 사랑한 다고 말해봤을까?

아니다. 전혀 해보지도 못했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북한에서는 잘 하지 않는다. 이는 오직 김씨 일가를 우상 숭배하면서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며 마음이 더욱 아파오는 오늘 은 먼저 보낸 어머니와 셋째 언니, 그리 고 나의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셋째 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사랑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호에서 계속됩니다

CREDO INTERVIEW

사단법인 크레도는 각자의 영역에서 세상을 더욱 가치있고 살만하게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열정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희망을 쏘아 올리는 사람들, 언제나 청년인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페미니즘의 흐름을 바꿀 진짜

'센 (Saint) 언니들'



Ⅰ 시작 된 배경

센saint언니는 여성청년 단체입니다. 저희는 평범한 또래 여자청년들이 모여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리더로의 성장과 한편으로는 미래의 가정의 구성원으로,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을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해고민하다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지금 사회는 독립적인 여성의 자아실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것이 과열되어 남성과의 연합과 가정의 구성원으로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기조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회

가 점점 더 여성의 영향력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청년의 때에 '올바른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남성과 싸우지 않고 연합하여 영향력을 확장 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페미닌(feminine)이란 '여성스럽다'라는 좋은의미인데, "페미니즘"이라는 것에 예민하다보니 페미닌이라는 의미마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드는 시대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망있고 순결한 여성들을 뜻하는 'saint'라는 단어를 써서 이 'saint'가 우리의 진정한 '센(strong)' 영향력임을 알리고자 하여 단체 이름을 <센saint언니>로 출범하였습니다.

|| 활동

►STUDY

2020년 9월, 차별금지법과 젠더이데올 로기로 인한 성갈등이 팽배했습니다. 그 래서 저희는 먼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 아야겠다는 생각에 '센언니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약 30명의 여성청년들이 참 여하였고, <바른인권여성연합>의 강사(정소영 미국변호사, 현숙경 교수, 이봉화 교수, 이기복 교수)분들을 초청하여 <세 계관과 여성이 보는 차별금지법>, <페미 니즘과 젠더이야기>, <한국여성주의 과 거와 현재>, <여성리더십과 여성의 시대 적 사명>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그리 고 각 파트별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언 론사를 통해 여성청년들의 언론활동인 < 센saint언니 칼럼>을 기획하여 연재했습 니다.

센saint언니의 두 번째 스터디는 2021년 여름방학을 맞아 온라인 스터디로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움직인여성운동의 계보를 찾아 가는 여정을 메인 테마로 삼았습니다. 진짜 여성운동의계보를 찾아 우리가 걷고 있는 여성운동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하는지 역사를 통해 반면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스터디는 10월에 진행이 될 예정 인데, <결혼을 공부하는 여성들>이란 주 제로 공부하려 합니다. 결혼과 가정을 말 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결혼도 자아발전 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인 것을 '리프레이밍(Re-framing)' 하는 도전을 여성계에 던지고 싶습니다.

▶ 문화운동 / 무브먼트 / 굿즈 제작

(1) 낙태반대 거리캠페인 2020년 11월 낙태죄 폐지가 한창 이슈일 때, 이 이슈는 여성청년들이 더 목소리를 내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청년들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할 로윈데이 날에 명동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희 또래는 낙태의 경험이 많은 친구들 이 많은데,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 보다는 이미 태어나고, 태어날 생명들을 축하하 고 기다리는 BABY SHOWER에서 영감 을 받아, 핑크색 야구잠바를 입고 생일축 하 노래를 부르며, 생일축하 모자를 쓰고 거리에서 초코파이를 함께 나누어 주었 습니다. '말 못하는 태아를 대신해 이야 기하러 나왔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요." 생명을 기다리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으 면 좋겠어요.' 등의 센saint언니스러운 카피라이팅을 낙태반대 운동에 접목 시 켰습니다.



총 21명의 청년들이 함께 참여했고 이 중에는 남성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센saint 언니 커뮤니티가 여성청년들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 성역할의 연합을 더 꿈꾸기 위해 센saint언니와 함께 하는 남자들을 '아는 오빠'라는 브랜딩을 하여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Pray For Baby Human Rights라고 적힌 마스크를 센saint언니 첫 번째 굿즈로 제작해캠페인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선물로주고, 판매도 하였습니다. 센saint언니굿즈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헬로베이비 캠페인은 미혼모를 함께 응원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강 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었던 출구 앞 에서 버스킹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생명 을 포기하지 않은 그녀를 응원합니다.'라 는 메시지로 응원가를 조용히 부르며, 당 일은 빼빼로 데이었는데 빼빼로를 선물 로 나누어주며 생명에 대한 존엄성도 알 렸습니다.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메시 지를 문화적으로 거리에 녹아내는 감성 캠페인이었고 이 캠페인으로 '센saint언 니'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되어 방송활동을 하고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2) <언플랜드> 단관 캠페인 문화운동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문화' 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에서 비롯되 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화 < 언플랜드>를 센saint언니&아는오빠가 함께 보는 단관 캠페인을 열었고, 100 명이 넘는 청년들이 영화를 관람했습니 다. 그리고 이 영화가 더 흥행하기 위해서 O.S.T로 유튜브에 커버 릴레이가 펼쳐져 야겠다고 생각을 하여 언플렌드 O.S.T 커버 릴레이를 기획하였고 많은 뮤지션 들이 동참하였습니다. 레비스탕스, 언다 이트, RUAH 등 각 장르의 뮤지션들이 참 여하여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온라인에 유통시켰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모두 재 능기부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일 들이었습니다.

▶ 커뮤니티 '살롱' 부활, 센saint언니 살롱

여성청년들이 함께 모이고 만나 생산적 인 일들을 하는 커뮤니티가 많이 없어 센 saint언니 살롱을 기획했습니다. 1회는 센saint언니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내용 을 함께 토론하고 발표하였고, 아카데미 수료식도 진행하였습니다. 뮤지션들을 초청해서 문화공연도 함께 나누며 여성 청년들의 모임으로 진행했습니다.

2회는 2021년 5월 성년의 날에 올해 만 20살이 되는 청년들을 초청해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며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행사 '사랑받기 좋은 날'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기복 교수님의 초청 강의를 비롯해 함께 순결서약식을 진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있는 여성청년들을 초청하여 토크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탈북여성, 웹툰작가, 여대생, 연령별 직장인 등 나이와 하는 일은 다르지만 '여성'이라는 공감대로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카드뉴스 제작

센saint언니는 문화적인 감각과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아기자기한 이미지로 여성의 목소리를 전하는 카드뉴스를 계속해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혼전순결을 지킨 연예인 커플', '입양맘을 응원합니다.', '질투에 현명한 여성들' 등 여성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어 함께 이야기해보는 컨셉으로 청년층의 호응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젠더이데올로기와 문화막시즘에 대항하는일들을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언어와 텐션으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문화적인기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래 여성청년들을 세우고 함께 다음세 대, 여성청소년과 탈북여성들에게 비전 을 심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활동센saint언니

센saint언니는 여성의 달란트와 감수성, 문화적인 기획력이 필요한 각종 청년단 체들과 연합하여 행사를 하고 차별금지 법 반대 토크쇼를 진행하며, 국회 앞 반대 시위 기획과 카피라이팅에도 함께 연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센saint언니는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닌 연합사역의 브 릿지와 허브역할로 재능을 기부하며 진 정한 여성의 영향력을 설파할 것입니다.



▶ 국가/민족적 여성운동 EZER KOREA

센saint언니는 그저 여성청년 커뮤니티로 끝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을 섬기고민족을 살리며, 북한의 해방을 돕고 더 나아가 통일을 준비하는 국가적 여성운동의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돕는 여성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EZER KOREA 운동을 펼치고있으며, 여러 강의를 하고, 칼럼을 쓰며,



CREDO CULTURE

한 사람의 세계관이 그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화를 바꿉니다. 한 사람이 추구하는 진, 선, 미의 가치는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사단법인 크레도는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생명에 대한 논쟁 : 다윈주의의 거대한 역설, 돌연변이 김학성 교수



[The Space - Photo Drawing] 이설영 작가

CREDO CULTURE

생명에 대한 논쟁: 다윈주의의 거대한 역설, 돌연변이

김학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진화원동력의 두 기둥은 자연선택과 돌연변이다. 진화론이 자연선택에 건설적 기능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자연선택은 '보존·축적' 기능에 그치기 때문에 진화론은 돌연변이를 진화의 원동력으로 본다.

진화란 미세한 변이의 오랜 축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므로, 새로운 생명체의 갑작스러운 변혁인 돌연변이와는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윈도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진화론은 이러한 논리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돌연변이를 긍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해서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인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인정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인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돌연변이란 DNA 유전정보의 명령을 복사할 때 우연한 오류로 발생하는 생명체의 변혁을 말한다.

돌연변이는 '종간 변화'를 말하는 '대돌연변이 또는 대진화'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종내 변화'인 '소돌연변이 또는 소진화'인 변이와 구별된다.

주의할 점은 '소진화'의 용어 사용이다. 종내 변화인 소진화는 변이로서 과학계에서 이견 없이 널리 인정되는 것으로, 종간 변화인 진화와 거리가 멀다.

진화론은 '(대)진화'의 증거가 없다 보니 종내 변화인 변이를 소진화로 명명하면서, 마치 진화가 '실제로' 존재하기나 한 듯 대중의 판단을 속이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점진적 변이로 '종간 변화'가 불가능하지만,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도 그 지속적 변이는 '오랜 기간, 아주 많이, 효율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1967년 수학자 '울램'의계산에 의하면, 눈(eye)이 변이의 축적으로 진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면서, 그만한 돌연변이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시간이 충분하기만 하면 진화가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물론 아니다.

이렇게 점진적 방법으로는 '방법과 시간', 모든면에서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도약진화'(대돌연변이)가 주장되기 시작했다. 버클리 대학의 골드 슈미트는 진화는 작은 돌연변이의선택과 축적으로는 불가능하며 비약적인 대돌연변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물론 그는 다윈주의자들로부터 미치광이 정도를 넘어죄인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 하버드 대학의 굴드는 단속평형설을 통해 슈미트의 '도약진화'를 지지하면서, 점진론의 신다윈주의의 죽음을 선언했다.

고생물학자인 굴드는 수많은 화석이 조사되었지만 단하나의 '중간과정 화석'도 발견하지 못하자 점진설과 결별하면서 도약진화를 지지한다. 이로써 진화론은 점진적 방법을 견지하는신다원주의와 도약적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단속평형설로 양분되었다.

점진론자인 도킨스는 도약진화를 비판하면서 도 '적당한 대돌연변이'는 필요하다고 한다. 늘 그렇듯이 도킨스는 '눈먼 시계공'과 '눈뜬 시계 공'을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눈뜬 시계공'을 뒷문으로 들여왔다.

그러나 돌연변이를 진화의 원동력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생명체는 상호 관련된 부분들의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결합'이기에, 이런 부분들이 우연한 돌연변이의 결과로 '한꺼번'에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상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 런 것이 가능하려면 기적의 개입이 필요하다. 도약진화란 뱀의 알에서 개나 고양이가 나왔 다는 것인데 진화라기보다는 창조에 가깝다.

둘째 돌연변이로 파충류의 비늘이 새의 날개가 되고, 파충류의 호흡기관이 새의 폐가 됐다는 것인데, 이는 낡은 계산기를 벽에 던졌더니 훌륭한 핸드폰으로 변했다는 것과 같다. 호흡기관은 조그마한 기능 불량도 수 분 내로 죽음을 초래할 정도로 생명에 절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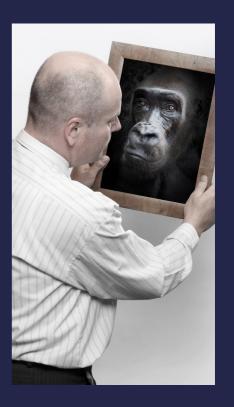
셋째 돌연변이는 '무작위적 변화'를 말하지 '인도되거나 계획된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무작위적 변화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계획 적 인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만일 필자의 노트 북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바이러스는 필 자가 작성한 헌법 논문의 내용을 뒤죽박죽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헌법 논문을 영어나 독일어 로 반역하거나, 경제학 논문으로 바꾸지는 못 할 것이다. 후자는 바이러스로는 불가능하고 초고도의 능력의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돌연변이는 '유전정보의 손실'이기에 엄청난 '유전정보의 획득'이 요구되는 '종간 변화'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정보 손실과정인 돌연변이가 계속되면 엄청난 정보의 획득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마치 거래할 때마다 매번 조금씩 손해를 보는 상인이 언젠가는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섯째 다윈주의의 거대한 역설이다. 발생학적으로 보면 대진화는 그나마 생물의 초기발생단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한데, 이 단계에서의 돌연변이 역시 생물에게 대단히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를 '다윈주의의 거대한 역설'이라고한다. 돌연변이여야 하는데 막상 돌연변이로는 생물이 죽게 된다.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 이후 과학계는 변이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창조 이야기'를 증명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온갖 거짓 예언자들과 돌팔이들이 등장하면서 창조주를 부정하고 조롱해 왔다. 다윈주의자에겐 물고기가 개구리로 되어야 하고, 뱀으로, 또 원숭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목적 없는' '자연적 과정의 결과'에 불과한 존재가된다. 다윈주의는 '인간 없는 인간관'으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보다 더한 평가절하는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고,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다. 인간의 존엄, 위상,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의 세상 모습이다.

다윈주의가 점진론을 취하건 도약진회를 취하건, 그 어느 것도 '종간 변화'를 설명할 수 없지만, 다 윈주의자들은 '진화'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진 화론자들에게 다윈주의는 논박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며, 다윈주의를 설명할 때까지 유효해야 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가능하다. '진화'를 고집하겠지만 '진화'이론'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The Space Photo Drawing

최지인 관장 (Choi Contemporaneity Art)



'우와 그림 멋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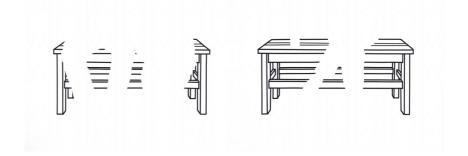
이는 이설영 작가의 개인전을 처음 방문한 관람자들이 처음 뱉은 말이다.

하지만 곧 이어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것을 깨달은 관람자들의 눈은 전시를 관람하는 내내 반짝였다.

처음 보면 그림인지 사진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 작품은 이설영 작가의 The Space – Photo Drawing시리즈다.







마치 라인테이프를 두른 것 같은 테이블과 의자는

〈 The Space - Photo Drawing 〉의 뒤를 잇는 〈 Moving Drawing 〉 시리즈다. 이는 실제 사물의 모서리에 직접 선을 그려 넣은 작품이다.

의자와 테이블은 실제 사물이지만 외곽선을 그려 넣어 평면처럼 보이기도 한다. 평면과 입체 중간의 사물들은 실제 전시공간에 놓여 전시공간과 관람자 속에서 여러 방면으로 해석되어진다. 관람자의 움직임에 의해 드로잉이 부분적으로 가려지고 다시 보이며 매번 새로운 드로잉 이미지를 보여준다.



전시의 막바지에 만날 수 있는 이 작은 그림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작품들을 한 곳에 품고 있다. 이〈My Artwork Box〉시리즈는 검은 선이 둘러진 캔버스로 한 방향이 아닌 여러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그리고 실제 캔버스의 모서리에 칠해진 검은 선과 이미지 속의 검은 선이 만나 마치 실제 상자와 같은 공간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착시효과를 주어 캔버스안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그림으로 재현된 대상들은 실제 전시공간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관람자가 마치 작품속의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만들어 작품 속 이미지와 전시 공간 사이의 확장된 공간의 개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설영작가는 실제공간을 평면화시키고 평면을 공간으로 만들며 2차원과 3차원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또한 사진, 설치, 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혼합하여 장르의 경계를 없애 작가만의 스타일로 풀어낸다. 이런 작가의 작품들은 관람자의 고정관념을 건드려 새로운 상상을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한다. 실제공간과 가상의 공간, 평면과 입체의 혼합의 장이 궁금하다면 이설영 작가의 개인전 〈Temperature of Space〉에 방문해보길 추천한다.